

# 시설물유지관리업

## ■ 업무내용

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 
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, 건축물의 경우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공사  
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·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·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
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·보수·보강공사

## ■ 등록기준

### 1. 자본금

법인	개인
2억원 이상	2억원 이상

### 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 3. 공제조합

2022.03.30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C등급 이상	C등급
시설물유지관리업	940,858원	2억원	64좌 (60,214,912 원)	80좌 (75,268,640 원)
※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				

### 4. 시설·장비

사무실	장비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	1. 육안검사 : 돋보기·망원경·카메라·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. 비파괴시험 가. 반발경도 측정기 나.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: 망치·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. 자기감응검사: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4.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: 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장치(resistivity), 전위차 측정장치(half cell potential)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	

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